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제1670호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규 칙

○ 규 칙 제１０８８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 소 행 정 과

공 고

○ 공 고 제５４７호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 교 통 행 정 과
○ 공 고 제５５１호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기 획 예 산 과
○ 공 고 제５５３호 2021년 남동구 재난관리실태 공시 안 전 총 괄 과
○ 공 고 제５５９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 의회사무국공고 제 １ １ 호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 의회사무국공고 제 １ ２ 호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 보건소공고 제 ２ ６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 품 위 생 과

회람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2년 3월 17일

남동구 규칙 제1088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8조 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폐기물 (담배꽁초”를 “폐기물(담배꽁초”로, “불법매립 행위는「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불법매립 행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한다)에게 연 3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신고

포상금이 연 50만 원 이상 지급된 경우

8.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제외기준을 구분하고 기준을 변경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무단투기 신고를 제한하고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제외기준을 구분하고 제외기준 변경을 통해 과도한 신고 제한 (안 제9조 및 제10조)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예산의 안정적 운영 도모 (안 제9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5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제32조,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
3.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2. 3. 11. ~ 2022. 3. 26.
5. 게시장소 : 남동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 032-453-26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1일

남 동 구 청 장

※붙임

처분 대상자	주소지	미배달 사유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윤*진	인천 남동구 구*로 3*2번길 *0 하*스*리 만* 1*6동 1**5호	폐문부재	만수동 9*4-*	주차장 기능미유지	원상복구명령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551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 무 과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재생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보고	보건행정과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안)	건 설 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2022년 3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예산과)

■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기획예산과)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무과)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세무과)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보육정책과)

■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도시재생과)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보고 .....
(보건행정과)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3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대응 수시분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310명 ⇒ 1,313명 (증 3명)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제4조 별표 3) 일부 변경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10→1,31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5→1,308**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	2	9	1	20
6급 이하 계	**1,227→1,230**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10명”을 “1,3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82명”을 “1,28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310명”을 “1,31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1,313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8					
2급	1	1				
4급	8	6	1	1		
5급	69	37	2	9	1	20
6급 이하 계	1,230					
별정직 계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31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 행 기 관 : 1,282명 2. (생 략) 3. 총 계 : 1,310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1,313명--- ----------. 1. ---------- 1,285명 2. (현행과 같음) 3. ---- 1,313명

(별지 제2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나. 관련 조문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순 증 : 1,310명 → 1,313명(3명 증원)

○ 2022년 예산의 직급별 인건비(기본급, 수당) 및 물건비(직급보조비) 등 적용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599,704천원(2022년 ~ 2026년)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임 덕 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9개월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91,749	124,167	126,029	127,920	129,839	599,704
재원 조달			91,749	124,167	126,029	127,920	129,839	599,70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91,749	124,167	126,029	127,920	129,839	599,704
	지방세		91,749	124,167	126,029	127,920	129,839	599,704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1.5%로 가정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14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22.01.13.)됨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2조, 제3조)

○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안 제4조)

○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지원 (안 제5조~제7조)

○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 (안 제8조)

○ 운영세칙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남동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위원회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지원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5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안 제15조제3항제1호)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제2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제15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③ ------ 5년 ---------- ---------- ---------- ---------- ---------- --------. ----------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 -- 20일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미영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6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 (안 제2조제2항)

○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 강화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 상향 조정

○ 그 밖에 개정안 반영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조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061(2019.4.16.)호 및 인천광역시 총무과-6209(2019.4.19.)호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비를” 을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 를 각각 “5배” 로 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영” 을 “「공무원 여비 규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를 “중” 으로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광고물, 노점상 단속·강제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시설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생활환경민원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의약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체납차량 영치 및 교부청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도로 기동정비 현장 지원·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보육시설 지도(현장)점검·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문서사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시청출입)	
	그 밖에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
② 상시출장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5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③ ---------- 5배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 -- 「공무원 여비 규정」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	9. ---------- ---------- 중 ----------

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월액여비 지급한도액 : 150,000원/월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지급한도액 : 120,000원/월

○ 월액여비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차액분 : 30,000원/월 추가 소요

○ 비용추계 : 30,000원 × 80명(예상지급대상) × 12월 = 28,800천원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개정안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061(2019.4.16.)호 및 인천광역시 총무과-6209(2019. 4. 19.)호

- 현재 자치단체 규칙에 규정된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여,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 도모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7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12.28.)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문구 및 세액공제 금액 변경(안 제7조제1항)

- 제1호: 고지서 1장당 “150원”을 “500원”으로,
- 제2호: “방식 따른”을 “방식에 의한”으로, 고지서 1장당 “500원”을 “1천원”으로 개정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의3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식 따른”을 “방식에 의한”으로, “500원”을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1. ----------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 방식에 의한 ---------- 1천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과장 이혜선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제목개정 2017. 12. 2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618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약정 포함)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토지)

○ 감면내용 : 2022년 7월·9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감면 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2022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재산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 한도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 한도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해당 재산세액을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 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 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세목별점유비율로 산정 후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남동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특례)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동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원

○ 관련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③ (생략)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남동구 임차 소상공인 전체 사업장 중 임대료 인하 참여 건물주 참여율 2%를 가정하여 2021년 서창동 상가 1개소 건축물 월 평균 임대료 2,200천원으로 전제함

나. 추계 결과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통계)	×	임대료 인하 참여율(가정)	×	평균감면액 [(표본임대료×평균인하율)×50%]	=	감면 추계액

⇒ 21,526개소 × 2% × 220,000원[(2,200,000원×20%)×50%] = 95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세(재산세)와 함께 병기 고지되는 시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2022년 1개년도 시행으로 생략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세무과장 김 혜 영**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⑨ (생략)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3조(정의)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5. (생략)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생략)

②~③ (생략)

〔 사 회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19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질병 치료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위탁시설

시설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비고
고잔 어린이집	논현고잔로128번길 37-21(고잔동)	700.18㎡ (지하1층/지상2층)	148명	1998.4.16 개원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 관리
- 어린이집 운영(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관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

○ 소요예산 : 6,001,033천원(5년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위치도 등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1부.

○ 참고2 : 위탁체 모집 공고문(안) 1부.

○ 참고3 : 관련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2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인건비(보육교직원 호봉승급)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3%) 적용 추산
- 운영비는 2021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2년~2026년

○ 비용추계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2년 ~ 2026년(5년)

○ 발생비용 : 6,001,033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5,437,166천원, 구비 563,867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041,811	1,067,301	1,093,557	1,120,601	1,113,896	5,437,166
국시비보조금			1,041,811	1,067,301	1,093,557	1,120,601	1,113,896	5,437,166
세 출			1,144,211	1,171,380	1,199,367	1,228,192	1,257,883	6,001,03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1,144,211	1,171,380	1,199,367	1,228,192	1,257,883	6,001,033
재원 조달			1,144,211	1,171,380	1,199,367	1,228,192	1,257,883	6,001,033
의존 재원	소 계		1,041,811	1,067,301	1,093,557	1,120,601	1,113,896	5,437,166
	보조금	국비	342,376	351,726	361,357	371,277	381,495	1,808,231
		시비	699,435	715,575	732,200	749,324	732,401	3,628,935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2,400	104,079	105,810	107,591	143,987	563,867
	구 비		102,400	104,079	105,810	107,591	143,987	563,867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 산정

-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률 3% 적용 추산

【참고1】

- 공보육의 품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획

국공립 고잔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종료 예정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 국공립 고잔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 해지 검토보고

[보육정책과-3111(2022. 2. 18.)]

Ⅱ 추진방향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합리적인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객관적 절차 이행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체 선정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개요

1. 위탁대상시설

(2022. 2. 22.기준, 단위: 명)

시설명 (설치일)	소재지	규모	아동현황		교직원
			정원	현원	
고잔어린이집 (1998. 4. 16.)	논현고잔로128번길 37-21(고잔동)	700.18㎡ (지하1층/지상2층)	148	105	20

○ 현재 위탁 현황

- 위탁운영자(원장): 신도영 / 위탁기간: 2019. 3. 1. ~ 2024. 2. 29.
- 위탁종료일: 2022. 2. 28.(예정)
- 위탁종료사유: 위탁운영자(원장)의 질병치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중도 포기

2. 위탁(예정)기간: 2022. 6. 1. ~ 2027. 5. 31.(5년)

3. 위탁체 모집방법: 공개모집

4. 위탁체 선정: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선정

Ⅳ 세부추진계획

위탁체 공개모집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22. 4. 4.(월) ~ 4. 25.(월)

○ 공고내용: 위탁시설, 위탁기간, 신청자격, 위탁조건, 선정기준 등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4. 18.(월) ~ 4. 25.(월)

○ 접수방법: 신청인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수장소: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제출서류: 신청서, 심사자료(운영계획 및 의지,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

3. 위탁체 신청자격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4.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 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 할 수 있음

위탁체 선정 심사

6. 위탁체 선정 심사원칙 및 기준

○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보건복지부)」 을 준용하되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위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7.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될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

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체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Ⅴ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절차 이행: '22. 2~3월말

□ 위탁체 모집공고 및 접수: '22. 4. 4. ~ 4. 25.

□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심사 절차 이행: '22. 5. 10.한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22. 5. 17.한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22. 5. 24.한

【참고2】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안)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일

남동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정원	개원(설치)일	비고
고잔 어린이집	논현고잔로128번길 37-21(고잔동)	700.18㎡ (지하1층/지상2층)	148명	1998. 4. 16.	변경 위탁

○ 기존 위탁체의 위탁 운영 중도 포기에 따른 위탁체 재선정

2. 위탁운영 기간: 2022. 6. 1. ~ 2027. 5. 31.(5년)

○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2022. 4. 4.(월) ~ 2022. 4. 25.(월)

○ **접수기간:** 2022. 4. 18.(월) ~ 2022. 4. 25.(월) / (토·일 제외)

○ **접수장소:** 남동구청 6층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09:00~18:00) 신청인 방문접수

- 신분증, 원장자격증 원본 지참
- 우편·인터넷·대리 제출 불가 / 법인·단체의 경우 위임장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총 15부 (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

- PPT 설명자료(USB 제출):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약 5분 분량)**

4. 신청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경력이 있어야 함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시 참여 가능해야 함

나.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이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다.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 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 되는 경우도 포함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 위탁체 명의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
-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단, 고용된 원장은 신청 가능)
  (고용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 제출)
-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 ○ 종사자 보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인건비 정부지원 중단
-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과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 광역시 보육사업안내,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체 심의·선정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10
■ 위탁체의 공신력(도덕적·법적)	10
■ 재정능력	5
계	10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를 준용하되,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은 일부 조정 가능

8.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순으로 운영계획 등 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조정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로 하되, 참석은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 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위원회 심사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선정함(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 접수 후 심의 전에 위탁체 포기에 따라 단수가 될 경우 심의 진행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는 단수로 심사 진행하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체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함

○ 위탁체 선정 결과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이하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남동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체는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서 총액의 10%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위탁체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위탁체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 제출

- 위탁운영 조건 등 관련 사항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 통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 시 발표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추가 보완 불가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로 선정되더라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위탁체가 어린이집의 교직원(고용원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위탁개시 20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인수인계에 임해야 함

(※ 단, 현재 위탁대상 어린이집에서 재직 중인 경우 제외)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보육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보육정책과 보육시설팀(☎032-453-5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

관 련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2620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재창조를 위한 방안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동네상권 활성화,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

○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위 치 : 남촌동 354-1번지 일원[별첨3]참조

○ 사업유형 : 광역공모/일반근린형

○ 사업면적 : 210,853㎡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

○ 추정사업비 : 168억원(국비80억, 시비40억, 구비40억, 기금8억)

□ 주요내용

※ 활성화계획(안)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평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사업목표	단위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A-1 길따라 걸음따라 골목길 환경정비 (HW/SW)	· 마을안길 정비 및 통학로 개선사업 · 셉티드 시설을 활용한 범죄안전시설 설치 · 마을정원화를 통한 마을길 녹화 및 게릴라 가드닝
	A-2 주민참여 세대통합 공원조성 (HW)	· 게이트볼장, 어린이 스마트 창의놀이터 조성 · 셉티드 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A-3 가가호호 프로젝트 (HW/SW)	· 공공임대주택 조성(인천도시공사 연계) · 집수리사업 및 집수리 컨설팅
동네상권 활성화	B-1 남촌 특화거리(HW)	· 구월지구 신시가지와 대상지를 연결하는 상가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상생발전 도모 · IoT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으로 보행안전 확보
	B-2 상인꿈터+: 상인꿈터플러스 (SW)	· 중장년 은퇴자 및 청년층 중심 창업인큐베이팅 및 팝업스토어 공간 지원 등 창업지원 프로젝트
	B-3 상권 활성화교육 (SW)	· 기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 및 컨설팅 · 상가간판정비 및 먹거리 축제 등 공모사업
남촌두레 활성화	C-1 남촌 어울림 플랫폼 (HW)	· 기존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C-2 남촌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SW)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C-3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S/W)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역량강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상품의 판로개척 고도화 지원으로 자립성 확보

□ 추진사항

○ 2019.09.0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0.07.03. : 공모제안서 접수(구⇒시·도)

○ 2020.07.31. : 현장평가(미선정)

○ 2021.01.01. :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

○ 2021.03.24. : 주민·전문가 공청회 개최

○ 2021.04.08. : 구의회 의견청취

○ 2021.04.14.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최

○ 2021.04.21. : 도시재생MOU 체결
○ 2021.05.03. : 공모제안서 접수(구⇒시·도)
○ 2021.06.02. : 현장평가
○ 2021.06.11. : 최종평가(미선정)
○ 2021.07.1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22.01.17. : 남촌동 도시재생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 2022.02.24. : LH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 향후계획

○ 2022. 3. : 구의회 의견 청취
○ 2022. 5. : 주민공청회 개최
○ 2022. 7. : 공모제안서 접수

□ 참고자료

1. [별첨1] 관계법령
2. [별첨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3. [별첨3] 위치도
4. [별첨4] 사업계획도(마스터플랜)

[별첨1]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장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첨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국토교통부장관)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착수(시장·군수·구청장 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시장·군수·구청장 등)

⇩

공청회 개최(시장·군수·구청장 등)

⇩

지방의회 의견 수렴(시장·군수·구청장 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등⇒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사업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시장·군수·구청장 등)

[별첨3] 위치도

[별첨4] 사업계획도(마스터플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보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보고

의안 번호	2621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삶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6p)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과제 목록(8p)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내용(9p)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 주요 성과지표 달성률(69p)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2)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70p)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지역보건법」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우 문 경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

의안 번호	2622

제출일자 : 2022년 3월 1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추진하고자「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보고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 위탁시설

- 시 설 명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 위 치 : 인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62 (논현동 66-2)
- 운영시간 : 화~일(09:00~17:00), (월요일 제외)
- 규 모 : 철골조 205㎡(1층)
- 운영대수 : 공영자전거 114대
  (성인용 61, 청소년 20, 어린이 10, 2인용 13, 다인승 10)
- 인력구성 : 4명 이상(대여소 운영 3명 + 교육 강사 1명)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위탁내용

-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업무, 공영자전거 수리 및 관리 등
-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관련 행사 등
-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소요예산 : 260,000천원(2년간)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치도

□ 현장사진

□ 참고 자료

○ 참고1: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계획보고 1부.

○ 참고2: 공고문(안) 1부.

○ 참고3: 관련법령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2년 남동구 생활임금 고시 기준

○ 비용추계의 기간 : 2022. 8. ~ 2024. 8.

○ 비용추계의 범위 : 공영자전거대여소의 인건비, 관리비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2. 8월.~ 2024. 8월(2년)

○ 발생비용 : 26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260,000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오영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8~2023.8)	2차년도 (2023.8~2024.8)	계
세 입			130,000	130,000	260,000
구 비			130,000	130,000	260,000
세 출			130,000	130,000	260,000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130,000	130,000	260,000
재원 조달			130,000	130,000	260,000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130,000	130,000	260,000
	구 비		130,000	130,000	260,0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1】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계획보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및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위한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사항에 대해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2
○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4조

Ⅱ 추진방향

○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을 통한 공영자전거 운영
○ 다양한 교육 및 행사 등으로 활발한 자전거 이용관련 프로그램 구성
○ 민간위탁기관 심사를 통한 기술 및 실무능력의 전문성 제고
○ 다수의 이용객 유치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Ⅲ 위탁개요

1 위탁개요

○ 위 탁 명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 : 130,000천원 범위 내
○ 인력구성 및 조직

- 기준인력: 4명 이상(대여소 운영 3명 + 교육 강사 1명)
- 신규채용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따라 인력 탄력적 편성

○ 운영기간: 3월~ 12월

○ 운영시간: 화~일(09:00~17:00), (월요일 제외)

※ 운영기간 및 시간은 남동구청장이 계절적인 요인 감안 조정 가능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 위 치 : 인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62(논현동 66-2)
- 규 모 : 철골조 205㎡(1층)
- 운영대수 : 공영자전거 114대

・성인용 61, 청소년 20, 어린이 10, 2인용 13, 다인승 10

2 위탁사무내용

○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보관대등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

○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업무, 공영자전거 수리 및 관리 등

- 현장민원 처리(대여 반납 불량, 요금결재, 이용안내 등)
- 대여 및 수리 관련 실적기록 관리

○ 자전거 타기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관련 행사 등

○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시설물 및 장비 소독 등

Ⅳ 사업자 선정 추진계획

1 수탁기관 공개모집

❒ 추진일정

의회보고	→	모집공고 및 접수	→	선정심사	→	협약체결	→	위탁운영
2022. 3월		2022.4월~5월		2022. 6월		2022. 7월		2022. 8월 (2년)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4월 ~ 5월

❍ 공고방법: 남동구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 위탁운영 참가신청서
-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수탁운영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간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법인(단체) 현황
- 서약서, 보안각서, 확인서, 청렴이행 서약서, 위임장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 자전거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법인(단체)

2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 구성인원 : 6명

▸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구 분	인원(명)	위촉대상	추천기관
해당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6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남동구 소속 공무원(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포함)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가

❍ 심사위원 추천의뢰 기관

- 학 계 :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산업폴리텍대학교 등
- 기 타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추천 의뢰

❍ 심사방법(안)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위원별 심사평점

❒ 선정기준

❍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진행

❍ 심사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비고
계		100점	
법인·단체의 전문성	자전거 분야의 역량과 전문성, 법인·단체의 재정 건전성, 사업실적 등	30점	
사업수행능력	대여소운영 계획 적정성	40점	
참여 인력의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30점	

3 협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약체결

Ⅴ. 위탁예산

❒ **위탁사업비 : 130,000천원 범위내**

❍ 운영비(인건비) : 110,000천원

- 대여소운영 인건비(3명) : 93,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건비(1명) : 17,000천원

❍ 시설물 운영비 : 18,000천원

- 일반운영비, 재표비, 수선유지비 등

❍ 기타(홍보 등) : 2,000천원

- 자전거 타기 교육 홍보, 교육 수료증 제작 등

Ⅵ. 행정사항

❍ 2022. 3월 : 민간위탁 보고(안) 제출

❍ 2022. 4월 ~ 5월: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6월 ~ 7월: 선정심사 및 협약체결

❍ 2022. 8월.: 민간 위탁. 끝.

【참고2】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4. .

남 동 구 청 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나. 위　　치 : 인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62 (논현동 66-2)

다. 규　　모 : 철골조 (1층, 205㎡)

라. 운영대수 : 공영자전거 114대(성인용61, 청소년20, 어린이10, 2인용13, 다인승10)

2.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예정기간: 2022. 8. ~ 2024. 8.)

3. 위탁대상 사무

가. 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

나. 공영자전거 대여소 시설 및 보관대 등 유지·관리

다.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업무, 수리 및 관리 등

라. 자전거타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전거 관련 행사 등

마.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4. 위탁 조건

가. 위 탁 명 :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예정기간: 2022. 8. ~ 2024. 8.)

다. 위탁 사업예산 : 130,000천원 범위내 (2022년)

라. 기준인력 : 4명 이상(대여소 운영 3명 + 교육 강사 1명)

마. 운영시간 : 화~일(09:00~17:00)(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운영기간 및 시간 등 위탁조건은 동절기 및 코로나 19 영향으로 조정될 수 있음

5. 수탁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자전거 관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나. 또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준용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또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

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은 참가자격 제한함

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검토결과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제외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자는 우리구로부터 배부 받은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남동구 조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기관 현장 확인 등으로 공모참가신청 법인·단체의 실제 여부, 위탁사무 수행능력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사전 배제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교부 및 공고기간 : 2022. 4.

나. 접수기간 : 2022. 5.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우편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남동구 건설과(도로시설팀, ☎032-453-2722)

7.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선정과정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진행

1) 1차 심사(서류심사)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하여 자격 요건 및 허위 사실여부 등을 남동구청(건설과)에서 서류심사하여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 일정 개별 통보

2) 2차 심사(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 1차 합격한 사업신청자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심사 진행
  - ↳ 사업제안 PPT 설명 10분, 질의 답변 10분
  - ↳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사업신청기관의 관계자는 3인 이내이며, 제안 설명 순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순
  - ↳ 2차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평가결과 비공개

나. 심사 및 선정 : 총 100점 기준 고득점 순 선정

1)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2)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법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약체결

3) 우선순위 기관 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로 협약

※ 단, 사업 신청자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1개 업체만 신청할 경우 적격심사 실시 후 수탁여부 결정

4) 심사 시 논의내용,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다. 협약체결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남동구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협약 체결할 수 있음

8.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총10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비고
계		100점	
법인·단체의 전문성	자전거 분야의 역량과 전문성, 법인 · 단체의 재정 건전성, 사업실적 등	30점	
사업수행능력	대여소운영 계획 적정성	40점	
참여 인력의 전문성	인력의 전문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30점	

※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은 공고 시 일부 조정 가능

9.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통보(수탁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

10.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남동구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운영자 및 종사자 확보계획, 사업내역서, 재무제표 포함 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법인 또는 단체 현황(별지 제3호서식)

마. 서약서, 보안각서, 확인서(별지 제4~6호서식)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다.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음

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밝혀지거나 관련 법규 및 우리구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12.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건설과(도로시설팀, ☎032-453-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동구 사무위탁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법인(단체 일반현황(양식) 1부

4. 서약서 등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남 동 구 사 무 위 탁 신 청 서

사 무 명				
신 청 인	명 칭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법인(단체)명				
보 유 인 력	명(임원 명, 직원 명)			
보유 장비 및 기술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남동구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위에 상응하는 서류 각1부)

2. 사업계획서(운영 및 종사자 확보계획, 사업내역서, 재무제표 포함 등) 1부

3. 기타 증빙자료

2022년 월 일

[신청인] 법인 · 단체명 :

대표자성명 : ㊞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양식 변경가능)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시설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천원

Ⅱ 사 업 계 획

○ 자전거 분야의 역량 등
○ 재정수입 등 위탁사업의 안정적 운영 능력
○ 자전거관련 사업실적 등
○ 대여소 운영 목표, 비전 등
○ 대여소 유지관리 계획
○ 공영자전거 활성화 및 서비스 방안 등
○ 운영인력의 자전거에 대한 전문성
○ 총 관리인원, 분야별 인원, 업무분장 및 배치계획

※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Ⅲ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

Ⅳ 기 대 효 과 등

○

※ 그 외 필요에 따라 다른 항목 더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법인(단체) 일반현황

①업 체 명		②대 표 자	
③업종·업태		④직 원 수	
⑤주 소			
⑥전화번호		⑦FAX번호	
⑧홈페이지 (URL)		⑨E-mail	
⑩설립연도			
연 혁			
목 표			
주요사업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이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남동구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설명 등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법인)]은 귀 구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 동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인 서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동구청장 귀하

【참고3】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5. “공영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9. 8. 2.)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제목 개정 2019. 8. 2.]

제9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제9조의2(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9조의3(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9조의4(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따른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9조의5(자전거 이용자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8. 2.)

1.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19. 8. 2.)
2. 남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8. 2.)
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개정 2019. 8. 2.)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19. 8. 2.)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8. 2.)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8. 2.)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 8. 2.]

제16조 삭제 (2019. 8. 2.)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삭제 (2019. 8. 2.)

제18조 삭제 (2019. 8. 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2625

제출년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A)	2022년 본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합 계	1,089,741,430	1,008,146,198	81,595,232	8.09%	
일 반 회 계	1,071,315,350	989,720,118	81,595,232	8.24%	
특 별 회 계	18,426,080	18,426,080	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302,454	302,454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200	18,200	0	0.00%	
의료급여기금	1,737,426	1,737,426	0	0.00%	
지하수관리	272,000	272,000	0	0.00%	
주차장	16,096,000	16,096,000	0	0.00%	

3. 첨부서류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553호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과 관련된 전년도 재난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남동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2021년도에는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 2명이 발생하였고, 20,000천원의 인명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 31명으로 5년 평균보다 10명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10명 증가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재택 T/F와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T/F를 안전총괄과 내 구성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7종으로 87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23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발생에 대비할 방재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관련 분야 27개 교육과정을 31명이 이수하였으며, 지역주민 5,276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 재난·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산불예방 캠페인과 화학물질 누출사고 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재난관리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재난 예방에 힘썼습니다.
- 신속한 재난대응·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그리고 안전관리 정책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12개의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재난방지시설에 관하여는 7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 사업에 28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260백만원이며 100% 확보되었습니다.
- 확보액은 최근 5년간 평균 1,166백만원보다 94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4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자연재난 대비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에 3,162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13개 시설 중 52개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46%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의 재난관리 역량은 재난관리 기금 관리, 안전관리체계 확립,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및 재난대비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 25.	폭염	폭염특보로 인한 열사병 사망 1명	재난지원금 지급	10,000천원 지급
7. 27.	폭염	폭염특보로 인한 열사병 사망 1명	재난지원금 지급	10,000천원 지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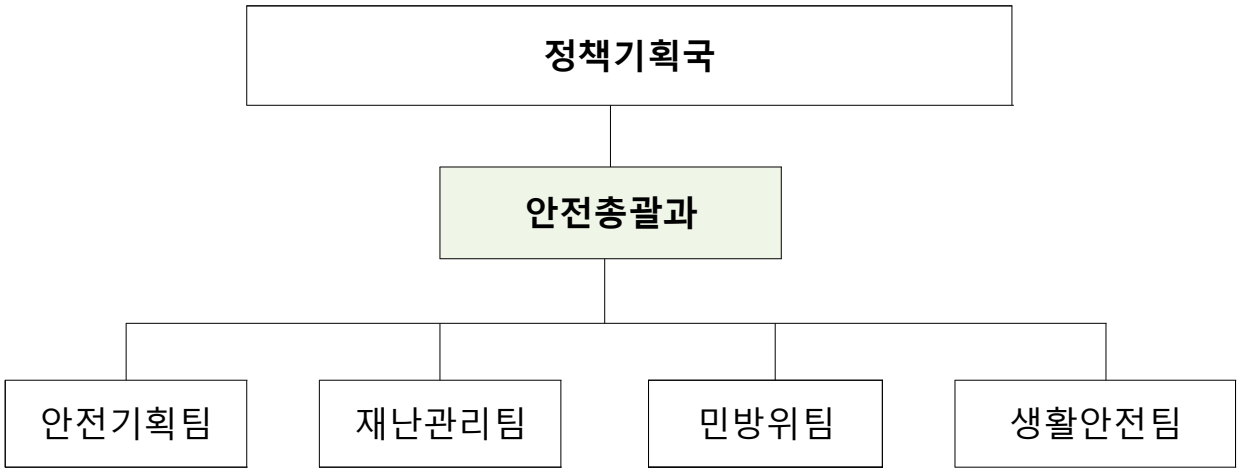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2	22	0	1	4	6	7	4	
	현원	31	31	0	1	9	10	8	3	자가격리·재택 T/F 및 일상회복지원금 T/F포함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3	3	0	0	0	0	1	2
	현원	1	1	0	0	0	0	0	1

* 정원 : 행정·방재안전직 복수 직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직 현원(인원) * 방재안전직 포함	18	17	18	21	31
방재안전직 현원(인원)	-	-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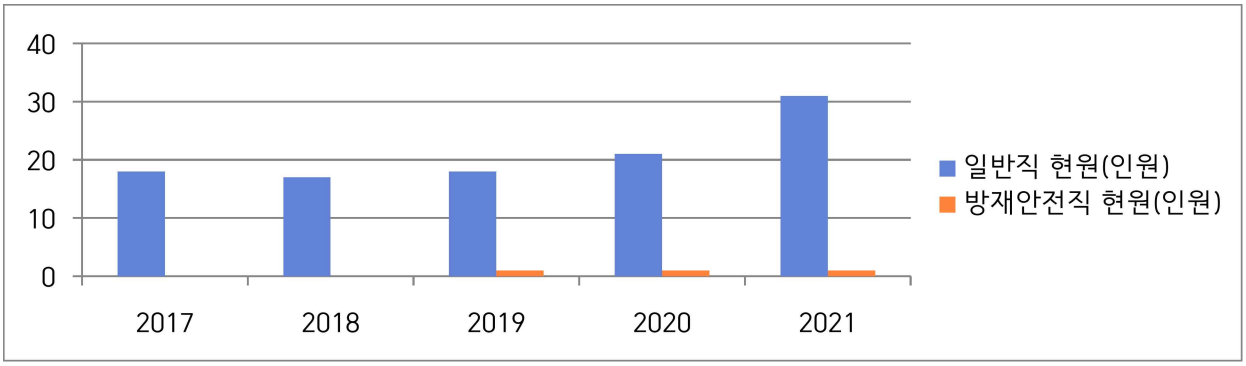

☞ 2021년 1월 방재안전직 1명 신규임용으로 방재안전직이 2명으로 증원되었으나, 휴직자 1명이 발생하여 현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됨.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	논현2동 2, 논현고잔동 1
자동우량관측장비	4	남동구청 1, 구월3동 1, 논현1동 1, 공단소방서 1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44	펌프장 23, 우수저류시설 6, 수문 2, 유수지 5, 절개지 4, 하천 4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2	만월산 5, 소래산 3, 만수산 2, 오봉산 2
재해문자전광판	8	구월1동 1, 구월4동 1, 남촌도림동 2, 논현2동 3, 논현고잔동 1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5	남동구청 외 14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	남동구청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개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1	3	3	3
자동우량관측장비	4	4	4	4	4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	10	33	39	44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1	12	13	13	12
재해문자전광판	4	8	8	8	8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6	6	15	15	15
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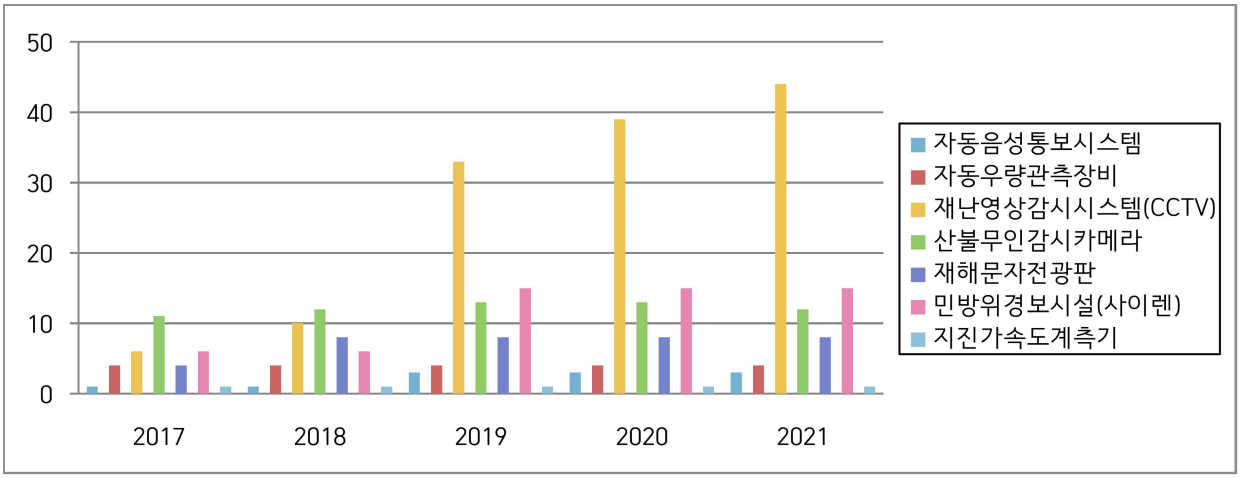

☞ 2021년 관내 우수저류시설 준공에 따라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추가 설치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정기안전점검과정(건축반) 신규교육	'21. 1.22. ~ 2. 5.	건설기술교육원	1	
e-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21. 2.16. ~ 2.28.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재난안전법령	'21. 2.16. ~ 2.28.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지진재난대응	'21. 3. 1. ~ 3.3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e-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21. 3.16. ~ 3.3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소하천관리과정	'21. 3.25. ~ 3.26.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통신망이해 및 응용서비스 지자체 활용	'21. 4. 6.	인천광역시	1	
e-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21. 4.16. ~ 4.30.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1. 5. 1. ~ 5.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 역량 교육	'21. 5.16. ~ 5.3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e-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21. 5.16. ~ 5.31.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과정	'21. 5.17. ~ 5.1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법령	'21. 6. 1. ~ 6.30.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체계교육	'21. 6. 1.	인천광역시	1	
2021년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특성화 교육	'21. 6. 4.	인천광역시	1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체계 교육	'21. 6.15.	인천광역시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21. 6.15.	인천광역시	1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1. 8. 1. ~ 8.26.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1	
건설안전관리	'21. 9. 1. ~ 9.30.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1	
2021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전산 교육	'21.10.18. ~ 10.20.	행정안전부	2	
기후변화와 재난관리과정	'21.11. 1. ~ 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안전법령과정	'21.11. 1. ~ 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대비훈련 실무과정	'21.11. 1. ~ 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관리 총론과정	‘21.11. 1. ~ 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구호 일반과정	‘21.11. 1. ~ 11.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 커뮤니케이션 과정	‘21.12. 1. ~ 12.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과정	‘21.12. 1. ~ 12.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양수기 합동점검 및 작동훈련	‘21.4.14.	남동구 앵고개로 941번길4	14	양수기 합동점검 및 시범교육 실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안전송경연대회 (재난안전교육)	21.10.	어린이집	258명	교통안전,놀이안전등 (안전송 활용 참여형 교육)	남동구청	비대면 (영상참여)
안전지킴이 일기장 (재난안전교육)	21.7.~8.	학교	5,018명	교통안전,감염병예방등	남동구청	비대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72	42	75	64	31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15	2	74	0	14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훈련(인원)	0	12	96	0	0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995	4,439	36,108	13,321	5,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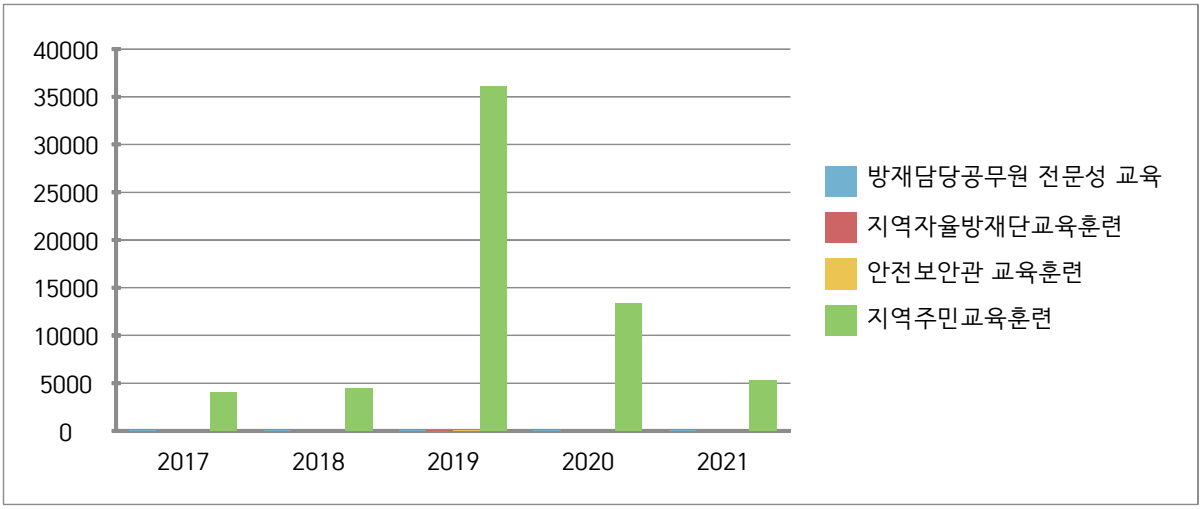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실내 집합 교육·훈련 취소 및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교육 참여 인원 감소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제보·처리 실적

◈ 제보·처리 실적 현황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130	450	436	-	14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대형산불대비 소방합동훈련	오봉산, 인천대공원 소방합동훈련 실시	'21.3.23. '21.3.23.	오봉산, 인천 대공원	80	
2	장수천 방제훈련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대응절차 훈련	'21.5.14.	장수천 하류	15	
3	장수천 방제훈련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대응절차 훈련	'21.10.22.	장수천 하류	13	
4	산불예방 캠페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21.11.3.	소래산	15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5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훈련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21.11.13.	남동제일 도금공단 사업장 합동조합 옥외창고	5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남동구, 전통시장 IoT 기반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4곳에 화재감지 시스템 설치	'21.1.11.	경인매일 외 18건	
2	공공마스크 대란 없애자 지자체가 직접생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마스크 직접 생산	'21.2.10.	KBS	
3	남동구, 소규모업소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지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21.2.24.	경기일보 외 22건	
4	남동구,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우선접종대상으로 백신접종 추진	'21.3.2.	인천신문 외 9건	
5	남동구, 구민자율소방함 설치로 화재 초기대응 강화	화재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구민자율 소방함 설치	'21.3.9.	경기매일 신문 외 19건	
6	남동구, 집중호우 대비 소래배수펌프장 정비	집중호우 대비 소래 배수펌프장 정비 추진	'21.3.18.	일간경기 외 20건	
7	남동구, 전국 최초 온택트 어린이집 방역 점검	양방향 화상회의시스템 이용해 온택트 어린이집 방역 점검	'21.3.19.	아시아일보 외 21건	
8	남동구, 길병원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맞손	길병원과 예방접종센터 운영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21.3.25.	YTN 외 20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9	남동구,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예방접종센터 본격 운영 개시	'21.4.6.	시대일보 외 17건	
10	남동구, 전국 최초 캐릭터 우리 동네 소화기함 개발	화재취약지역, 캐릭터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 완료	'21.4.27.	서울일보 외 10건	
11	남동구, 연이은 캐릭터 소화기함 개발로 시너지 효과 낸다	보이는 캐릭터 소화기함 설치 완료	'21.5.31.	새한일보 외 14건	
12	남동구, 인천 최초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	'21.6.16.	도민일보 외 19건	
13	남동구, 전국 최초 캐릭터 인명구조함 설치	소래철교에 캐릭터 인명구조함 설치	'21.6.23.	신아일보 외 18건	
14	남동구, 폭염대비 취약계층에 폭염예방키트 지원	폭염 취약계층에 폭염피해 예방키트 1,300개 전달	'21.6.23.	남동뉴스 외 1건	
15	남동구, 폭염 대비 취약직업군 쿨키트 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대응인력 및 단체에 쿨키트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21.6.25.	시민일보 외 2건	
16	남동구, 9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양산대여서비스' 운영	관내 무더위쉼터에 양산 무료대여서비스를 통해 일시적 무더위해소	'21.7.20.	신아일보 외 4건	
17	남동구, 인천 최초 집중호우 대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집중호우 대비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1.8.17.	시대일보 외 22건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8	남동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대규모 재난 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21.11.2.	중부일보 외 3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장홍보실적(횟수)	23	16	20	5	5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36	241	189	91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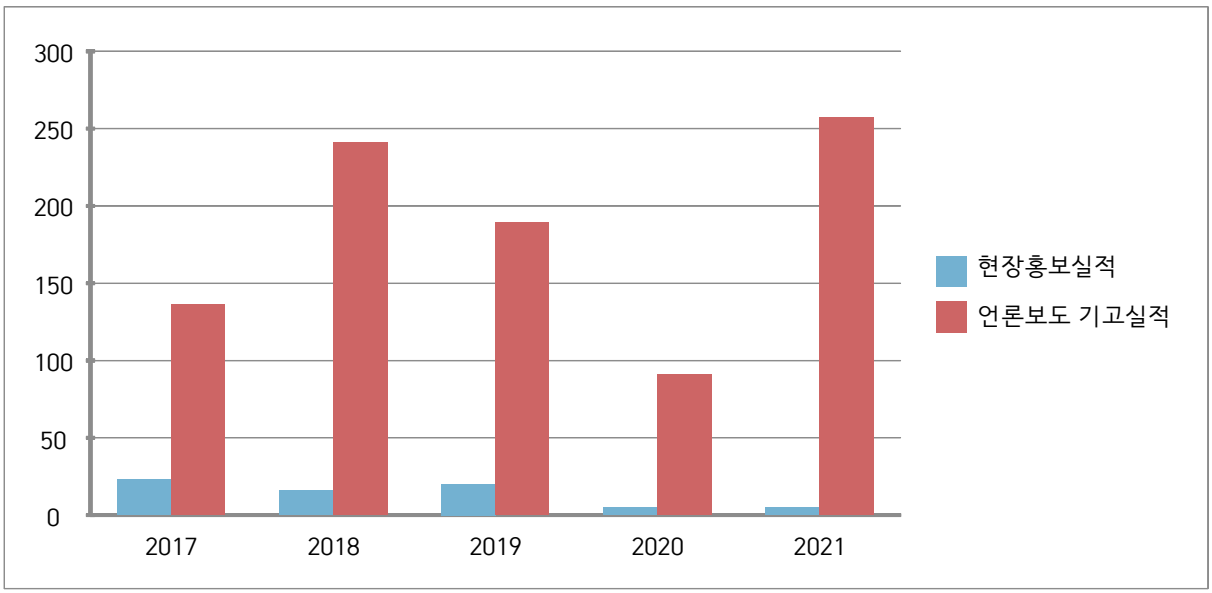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홍보 실적은 2020년부터 감소하였으나, 언론보도·기고실적은 감염병 예방활동을 주로 언론에 홍보하여 전년 대비 실적이 높음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 : 17인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 •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13인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본부장 : 구청장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안전총괄과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안전총괄과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구청장 ⇨ 인천광역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 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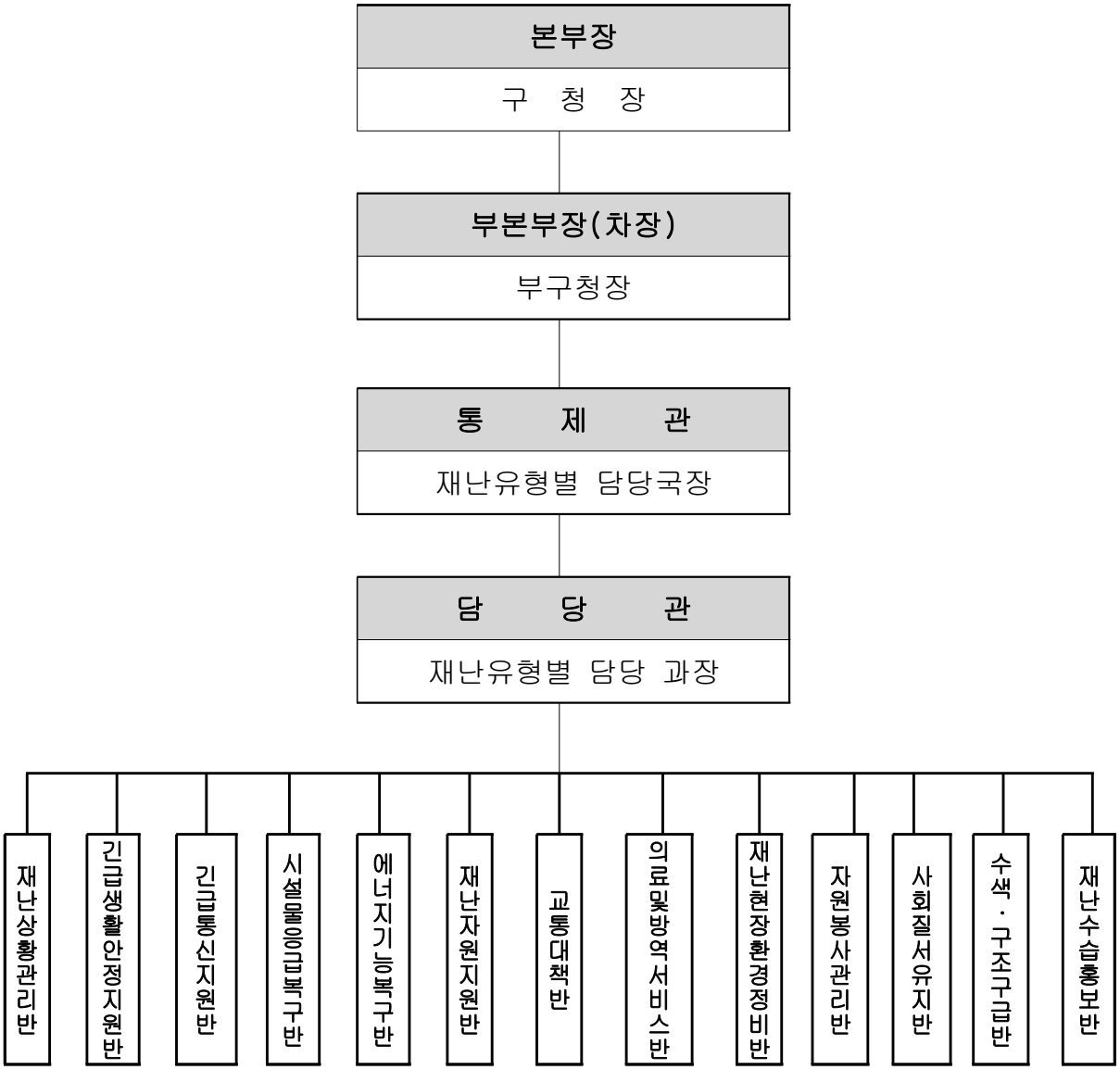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재난상황관리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정책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미디어정보과)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물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농축수

산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생활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자원 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 및 방역서비스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총무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대변인,미디어정보과)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나) 재난현장 안전관리체계

○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

통합지원본부장
부구청장
- 대응·수습 지휘
- 대응활동 조정·지원
-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언론대응반

연락관 유관기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응급복구반 등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대응계획수립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 긴급복구 • 주민대피 및 보호	•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 장비·자재·시설 지원 • 통신·교통 지원	• 민원 접수·처리 • 생활안정 지원 •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❶ 예산	❹ ❺ ❽ ❾ ⓫ ⓬	❸ ❻ ❼ ❿	❷ 법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❶ 재난상황관리	❷ 긴급 생활안정 지원	❸ 긴급 통신 지원	❹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❺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❻ 재난관리자원 지원	❼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❾ 재난현장 환경 정비	❿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⓫ 사회질서 유지	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⓭재난 수습 홍보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전화번호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 차량통제 및 교통관리 지원 ○ 현장출입 통제 지원	718-3294 454-9761
인천남동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긴급구조 지휘·통제	870-5280 723-5519
인천 동부지원교육청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교육 ○ 각급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460-6114
육군 제7851부대	○ 인력 및 장비 지원	620-6410
남동수도사업소	○ 단수 및 비상급수 대책	720-3516
인천상공회의소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 재난예방 안전점검 지원 ○ 재난대비 안전의식 교육 강화 ○ 재난업무 지원 및 협조	810-2800 812-4347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	○ 전력차단 및 공급 ○ 비상발전기, 조명등 설치	830-5213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 인천지역본부	○ 전기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 정기 안전점검	440-6863
KT인천지사	○ 긴급전화 가설	426-9001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인천지역본부	○ 가스차단 및 공급 ○ 정기 안전점검	560-3724 570-7756 834-3002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 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439-7272 437-3381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 구호물자 지원 및 구급교육 지원·협조	810-1330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 현장 의료소 설치 ○ 응급환자분류 및 응급조치	460-3015
남동모범운전자회 해병대인천남동구전우회	○ 경상자 후송 차량 지원 ○ 재난현장 교통질서 계도 ○ 인력지원	463-6880 466-7677
남동구여성단체협의회	○ 재난현장 자원봉사	446-3320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2019.11.08.	
남동구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 수상안전교육 지원	2020.09.25.	
남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안전보안관 운영	2020.10.30.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2015.05.15.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 재난예방 및 대비, 재난대응 및 복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2020.05.15.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난관리기금 관리	2005.02.22.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05.04.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재취약계층 지원	2018.09.27.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등에 관한 조례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007.02.09.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7.08.03.	
남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2.12.31.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남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1.04.30.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1.11.09.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보건 의료	길병원	지하5층, 지상18층 대지면적6,828.9㎡, 연면적 15,225.33㎡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2013.10	해당사항 없음	
교통 수송	인천 교통공사	지하3층, 지상8층 대지 222,376㎡ 연면적 23,135㎡	인천 교통공사	2015.10	해당사항 없음	
식용수	수산 정수사업소	지하1층, 지상3층 대지 216,267㎡ 연면적 19,327㎡	인천광역시	2015.10	해당사항 없음	
식용수	남동 정수사업소	지하1층, 지상2층 대지 142,209㎡ 연면적 3,165.85㎡	인천광역시	2021.09	해당사항 없음	
공동구	논현 공동구	지하1층, 지상2층 대지 505㎡ 연면적 3,665㎡	남동구	2020.06	해당사항 없음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남동구 관내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관내	수현교 외 27개소	'21.2.25. ~ 12.23.	78	시설물 안전점검
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소래·논현 공동구	1개소 (연장:1.14km)	'21.5.10. ~ 5.28.	-	공동구 구조물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
지하안전 육안점검	소래·논현 공동구	1개소	'21.7.15. ~ 7.21.	-	공동구 주변 도로상태 육안점검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소래·논현 공동구	1개소 (연장:1.14km)	'21.11.23. ~12.24.	21	공동구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방재시설 정비	관내	수문, 펌프장 유수지 정비	'21. 1. 1. ~ 12.31.	556	방재시설 유지 관리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21. 1. 1. ~'21.12.31.	2,800	관내 하수도 구조물 유지관리
산림 내 사면 복구 및 사방시설 보강공사	간석동 12-3번지 만수동 산6-2번지	2개소	'21.4.~5.	13	사면복구를 통한 사전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297	8,468	8,065	5,172	3,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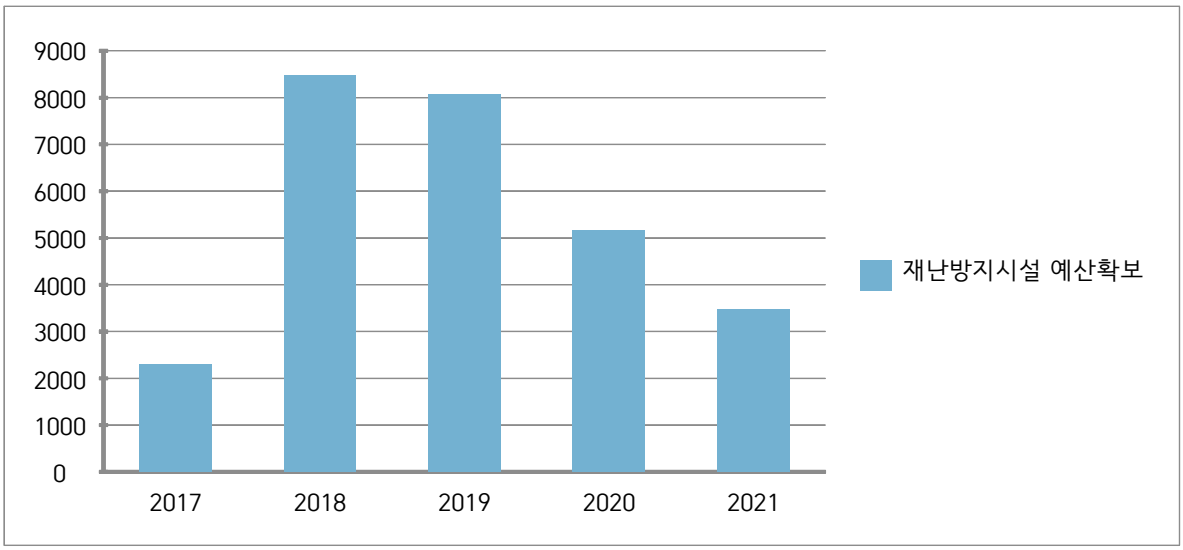

☞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배수펌프장 정비 등 재난방지시설물 점검·관리, 전년 대비 관내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비 감소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 휀스	흡착포	흡착붐	흡착롤	유처리제 (고상)	유처리제 (액상)	소석회
		m	BOX	BOX	BOX	kg	ℓ	포
총계	7종	120	18	20	8	200	90	6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오일훼스(m)	200	200	120	120	120
유흡착포(BOX)	9	10	17	9	18
유흡착롤(BOX)	10	10	11	9	20
흡착붐(BOX)	28	12	26	19	8
분말유처리제(kg)	200	200	180	200	200
액체유처리제(ℓ)	90	90	90	90	90
소석회(포)	18	18	22	1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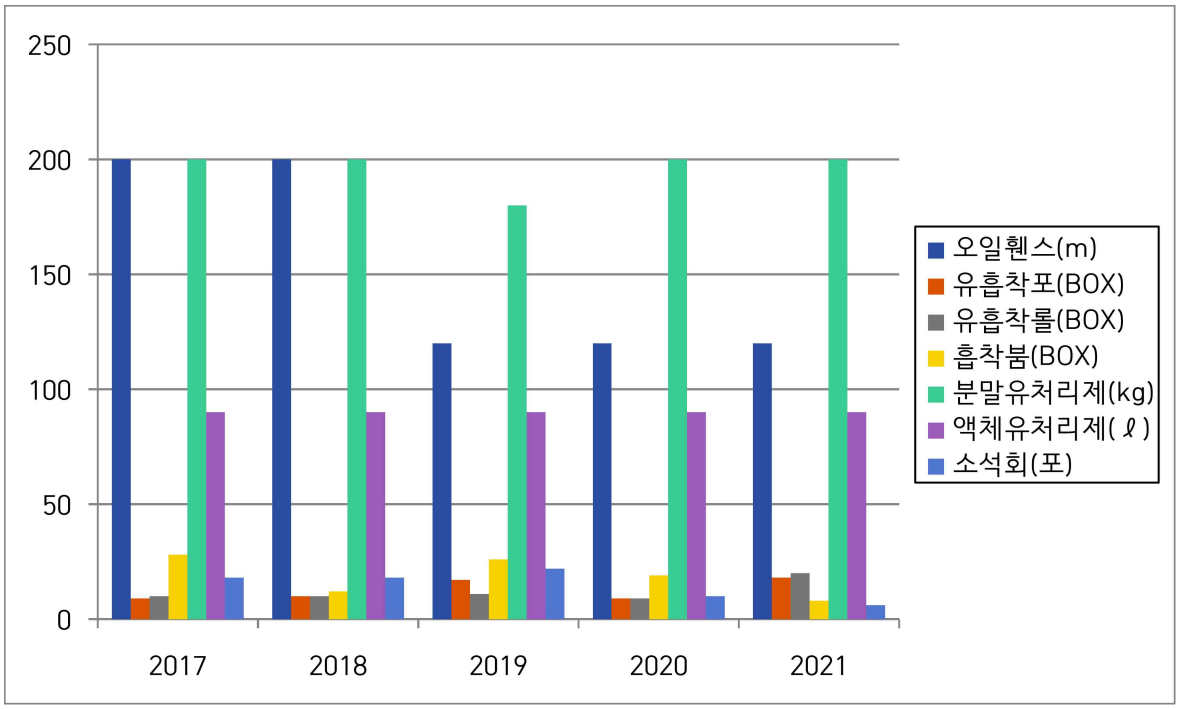

☞ 장수천 방제훈련(작업)으로 인한 오일훼스, 유흡착제 등 사용,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유흡착제 등 사용, 당직실 구비를 위한 흡착포 구입 등 매년 일정량 확보 구비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753	1,805	2,889	57	8,217	2
병 원	752	1,801	2,832	28	8,217	2
보건소	1	4	57	2	-	-
기 타	-	-	-	27	-	-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44	20,679	36	7,710	-	-	2	190	4	523	2	12,256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시설수		682	711	712	743	753
수용시설	개소	216	44	44	44	44
	수용인원	53,036	16,287	20,679	20,679	20,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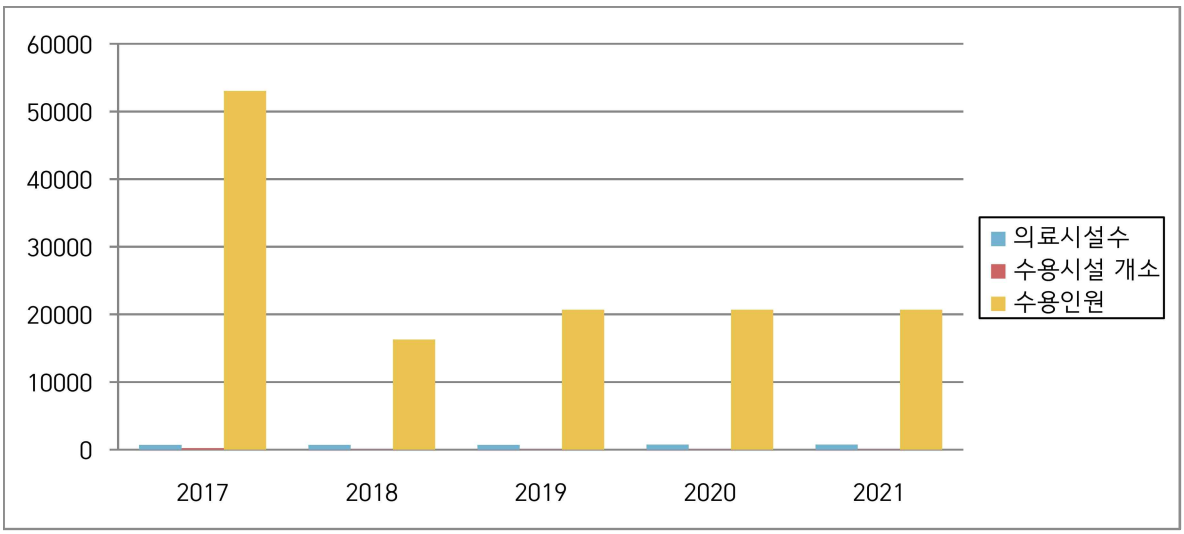

☞ 의료시설 매년 소폭 증가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 공작차	배연차	헬기	구급차	기타
총계	31	1	-	-	-	30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져	덤프	청소차	기타
총계	76	-	3	-	11	22	40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CCTV	무전기	등짐 펌프	진압삽	진압 갈퀴	진화 차량	렌턴	동력 펌프
총계	470	12	13	102	178	124	2	38	1

[기타장비]

구분	계	전기톱	양수기	기타
총계	684	6	678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조장비	31	32	33	32	31
복구장비	66	55	69	73	76
산불진화장비	464	466	463	476	470
기타장비	1,325	734	673	679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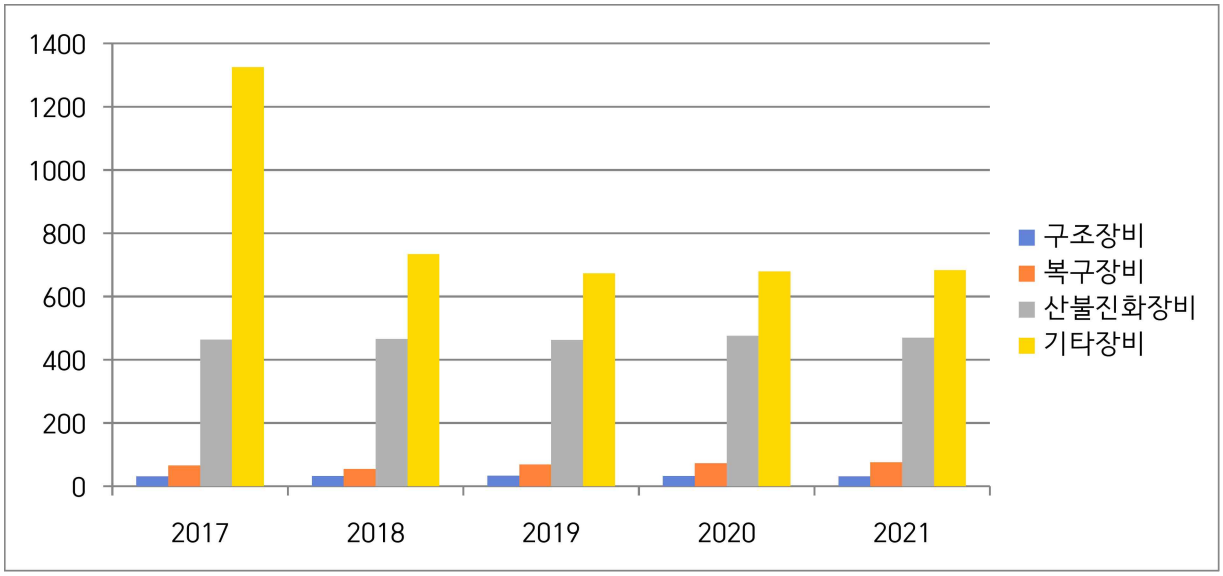

☞ 복구 장비 중 군소요 장비 제외, 기타 장비 중 삽 등 소모성 장비 제외, 매년 일정량 구비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71	23	-	-	2	-	14	-	32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기타
인원	74	11	15	4	-	-	14	-	30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조대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붕괴 수색 구조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병 전우회	모범 운전자회	자율 방재단	남동구 자원봉사자
인원	125,280	304	10	40	10	47	383	99	104	470	123,81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술인력	35	35	58	71	71
기능인력	92	40	78	78	74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24,496	106,036	115,845	120,880	125,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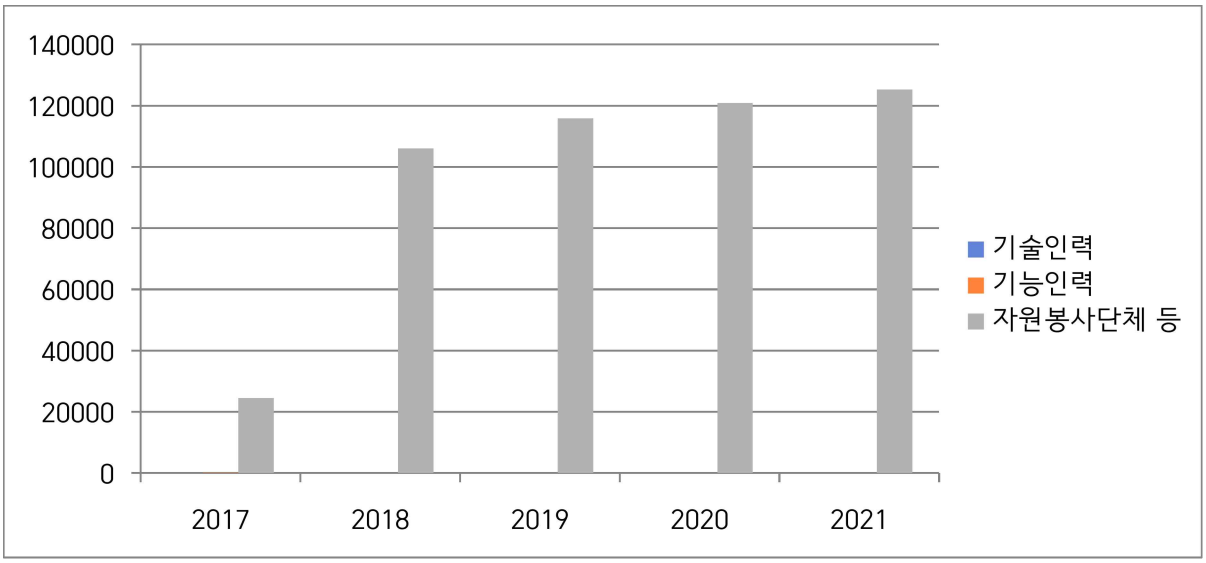

☞ 지정 자원 이동에 따른 기술인력 증가, 지역단위의 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자 회원수 증가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우수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1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113	52	-	-	46
건축물	99	41	-	-	41.4
도로시설	13	10	-	-	76.9
공동구	1	1	-	-	10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내진율	89.2	71.1	63	64.3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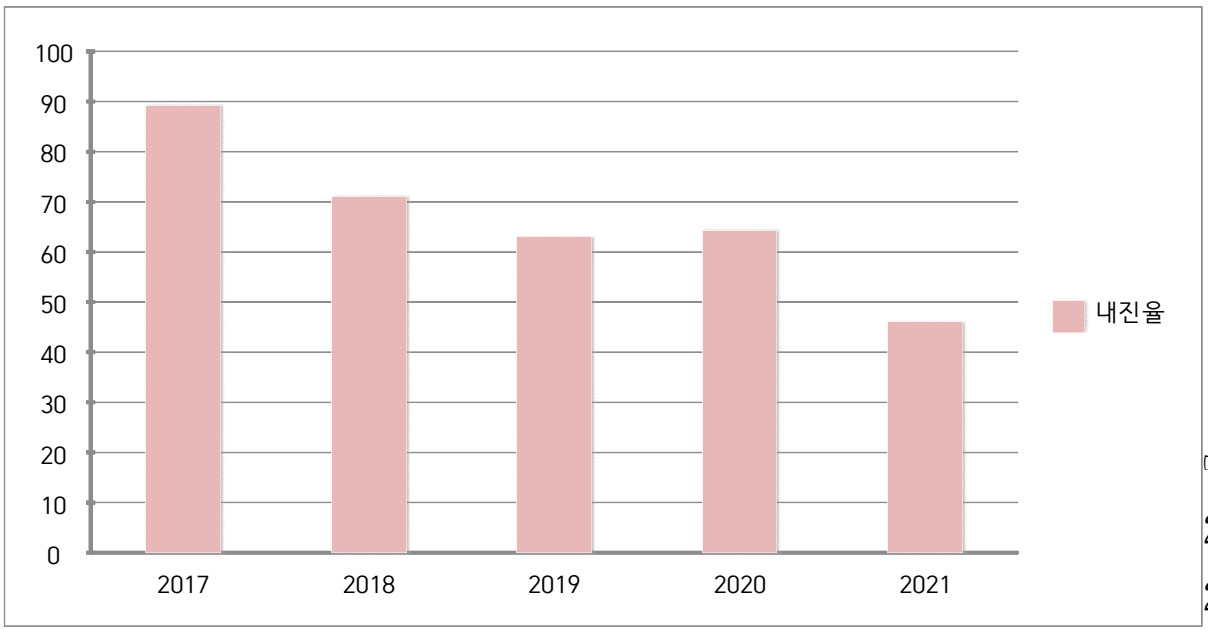

☞ 2021년도 어린이집, 경로당, 배수펌프장 등 내진 보강 대상 시설물 추가로 내진율 감소

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개소)	표지판(개)				경보시스템(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남동구	50	389	220	169	-	50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13,867	17,468	7,744	-	2,714
지구수(개소)		1	1	1	1	1
긴급대피장소(개소)		40	50	50	50	50
표지판	안내표지판	0	220	220	220	220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40	58	58	58	169
	대피로 표지판	0	0	0	0	0
경보시설(개소)		39	40	50	5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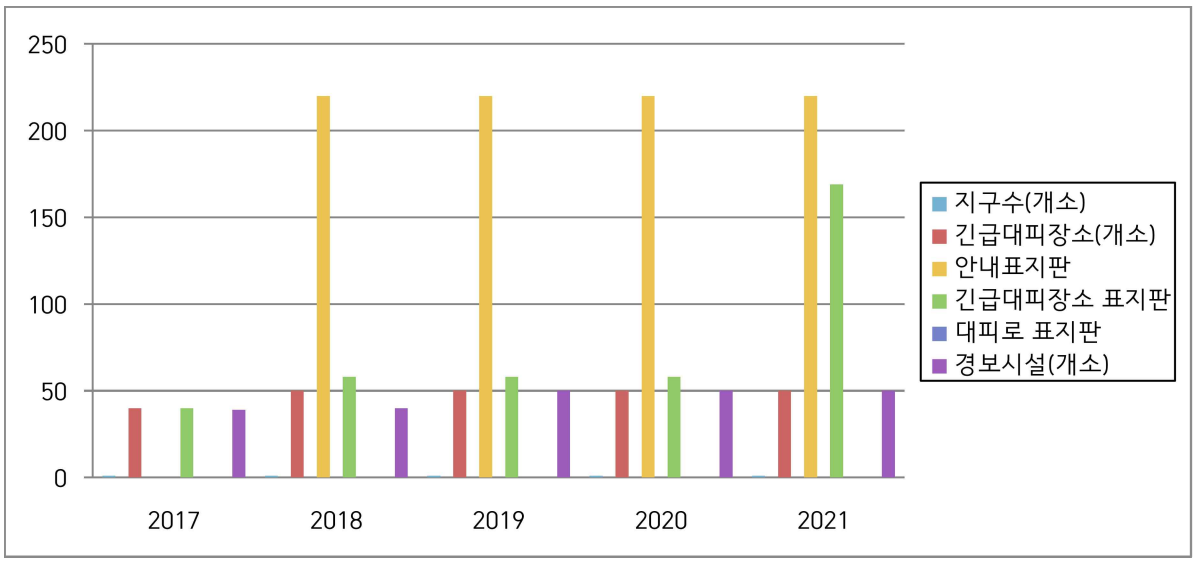

☞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대피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대피소 표지판 추가 설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260백만원	1,260백만원	100%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1,211백만원	1,211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확보액 (당해연도)			1,073	1,120	1,168	1,211	1,260
사용액	합 계		213	274	759	152,681	3,162
	공공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66	87	46	278	594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147	187	713	2,543	2,568
	민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	-	-	149,8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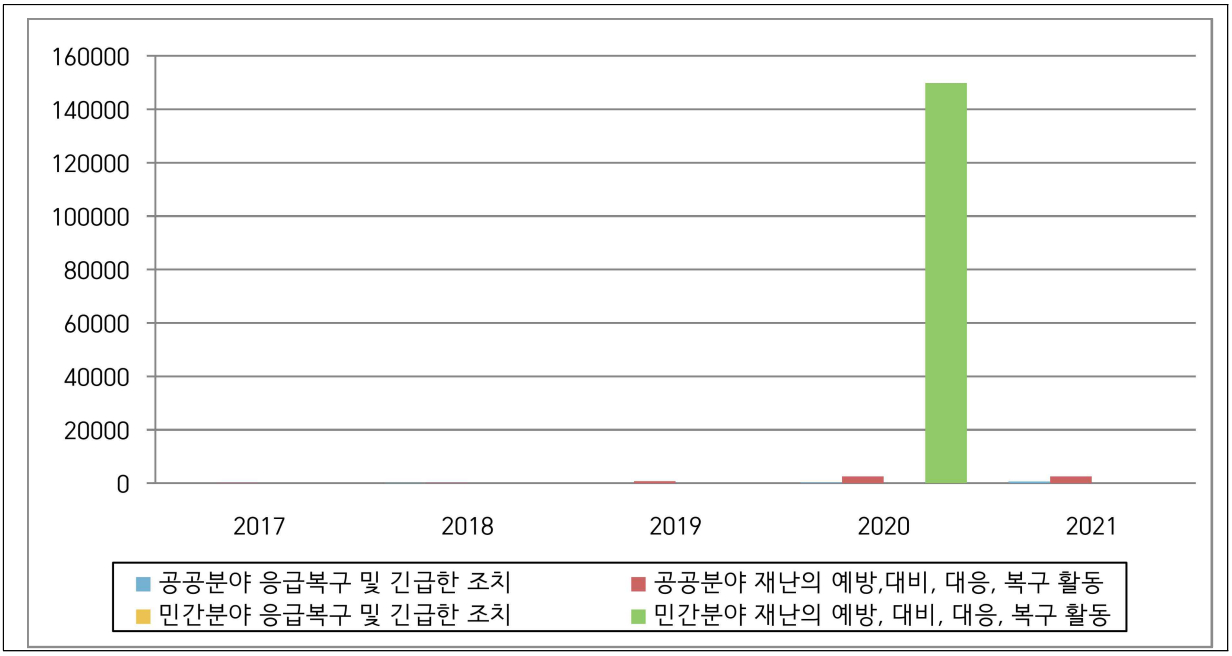

☞ 전년도에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금 사용이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수방시설물 공사 등 자연적 재난 대비·대응과 구민들을 위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원으로만 사용하여 전년 대비 지출금액이 현저히 적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8	산불예방, 산불방지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공원녹지과	2015	산사태예방 및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대응 및 대비 지침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4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응 및 대비 지침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4	해상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대비 지침
공동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건설과	2013	공동구 재난으로 인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5	사업장에서 대규모 인적사고의 발생할 우려 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수산과	2016	가축질병의 발생에 대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보건행정과	2011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보건의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2	보건의료분야(의료기관 서비스 중단)에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전력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업지원과	2017	전력수급 불안으로 국민생활 장애 및 인적사고 발생우려에 따른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도시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2017	지하철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수산과	2018	조수재난(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연근해 어선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수산과	2018	연근해 어선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08	풍수해 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지진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2	지진재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대형화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대형 화산 폭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축과	2019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사고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가뭄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9	가뭄 재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정보통신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미디어정보과	2019	정보통신 사고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문화재 시설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문화관광과	2019	문화재 시설 사고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가스 천연가스 수급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생활경제과	2019	가스 천연가스 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한파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9	한파 재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폭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20	폭염 재난에 대한 대응지침 및 조치절차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2.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21.09.03.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2.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문화재시설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6.	·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개정 · 비상연락망 현행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11.10.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8.30.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가뭄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15.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한파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7.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폭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13.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공동구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3.24.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도시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10.13.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3.	· 행동매뉴얼 정기점검에 따른 현행화 ·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반, 상급기관 현행화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1.	·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및 AI특별방역기간 단축 · 위기관리체계도 현행화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8.31.	· 행정안전부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에 따른 주요 서식 등 개정 반영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3.	·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전면개정	
문화재 시설사고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21.09.06.	· 표준매뉴얼 개정 반영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21.09.07.	· 위기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지진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21.01.05.	· 상하반기 매뉴얼 정비 · 표준, 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대형 화산폭발 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	2021.01.05.	· 상하반기 매뉴얼 정비 · 표준, 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12.28.	· 대응조직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재난문자 발송절차 변경 및 표준문안 등 변경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9.02.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반영 ·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3.23. 2021.03.26.	· 산불 유관기관 간 위기 대응 공조체계 점검 · 산불통합지휘본부운영 체계확립 및 지휘역량 강화훈련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 능력 점검 · 산불통합지휘 역량 강화	
도시철도 대행사고 행동매뉴얼	2021.06.18.	· 도시철도 대형사고를 가상하여 복잡 다양한 현상상황에 대해 대응 단계별 문제해결을 통한 대응 및 복구 숙달 훈련	·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 능력 점검	
공동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4.15. 2021.07.27.	· 공동구 상수관 파열로 인한 침수대비 현장훈련	·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 능력 점검	
문화재시설사고 주요상황매뉴얼	2021.05.13.	· 문화재 주변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 문화재시설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대응 능력 배양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1.05.14. 2021.10.22.	· 가상의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설정하고 오염물질 확산방지·제거, 보고수행 절차 및 방제장비의 정확한 사용방법과 숙달 위주의 현장 업무 중심으로 실시	· 유류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대응 능력 배양 · 방제물품 정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0.10.15.	· 지하공동구 화재 발생을 가정한 토론 훈련 실시	· 공동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및 초기 대응 능력 배양	
천연가스 수급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020.12.29.	· 가스 공급중단 시 비상대응 등 신속한 가스공급 재개를 위한 긴급복구 작업 토론 훈련	· 가스 공급중단 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초기 대응능력 배양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매뉴얼 수	16	18	25	2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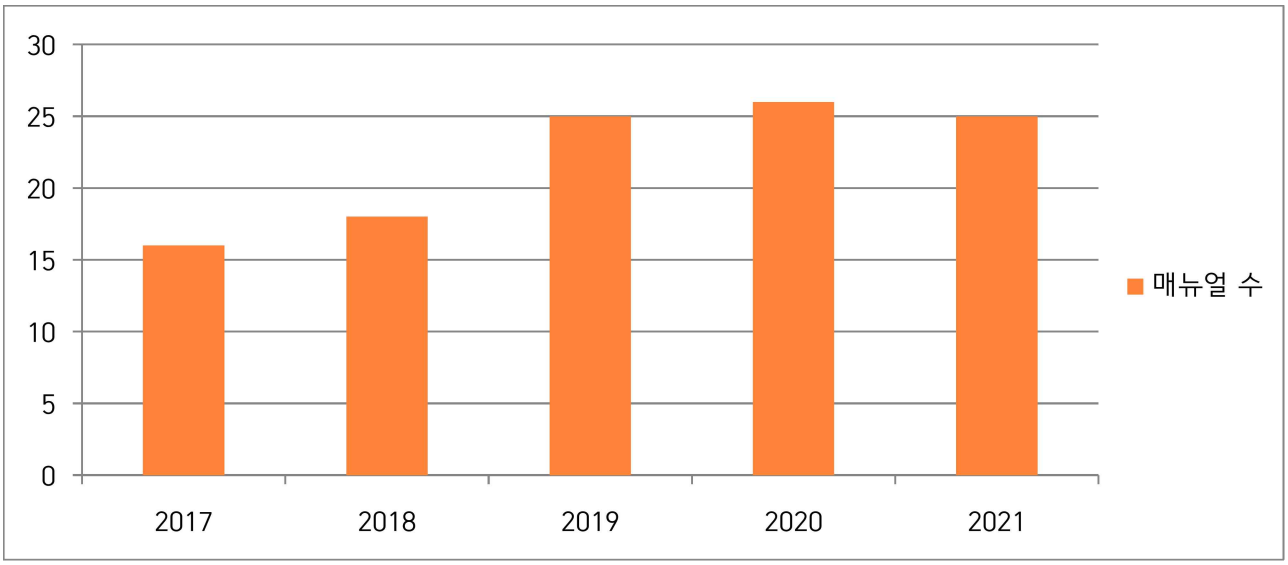

☞ 관내 지리적 특성상 해수면이 적조 발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낮아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적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삭제함

☞ 주민대피 명령, 상황판단회의 참석 기관 명시 등 새로운 지침을 반영하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21개 행동 매뉴얼을 개정함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 21년 평가 미실시

구 분	등 급(그룹)
진단결과	미실시

* (안전) A등급 <------> E등급 (위험)

◈ 연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등 급	4	2	미실시	D	미실시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난 유형별 수습 부서 및 업무

분야별	재 난 유 형 별	수습부서
자연 인적 재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해 당 부 서
	공연 및 행사장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문화관광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환경보전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및 관련시설 피해 공장화재, 가스·유류로 인한 화재, 붕괴, 폭발 등 소방대상물 사고로 인한 피해 전기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자연 인적 재난	도로, 교량 등 시설물 폭설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건 설 과
	건축물(건축과 소관), 축대, 담장등 사설시설물 붕괴 민간 건축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	건 축 과
	산림 및 공원 내 산불 사고로 인한 피해	공원녹지과
	차량, 지하철, 열차 등 교통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교통행정과
	기타 건설공사 현장 사고로 인한 피해	해 당 부 서

분야별	재 난 유 형 별	수습부서
국가 기반 재난	에너지 분야 (전기, 석유, 가스 등)	생활경제과
	식용수 분야 등 (다목적댐, 정수장 등)	안전총괄과 남동(수산)정수사업소
	보건, 전염병 분야 (의료서비스, 전염병, 의약품, 가축전염병 등)	보 건 소
	정보통신 분야 (통신시설, 통신망, 국가기간망, 주요전산시스템 등)	미디어정보과
	교통 분야 (도로, 화물, 항공, 항만, 철도, 지하철 등)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산업 분야 (국가산업단지, 주요산업체 등)	기업지원과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동구 안전총괄과(담당자 : 김정수, 전화 : 032)453-231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15. ~ 2022. 3. 29.(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박*현	인천84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현	인천84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길*희	인천81바**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진	인천84바**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선	인천86바**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105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선	인천86바**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105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최*구	인천84바**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47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가*희	인천84바**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길* 주식회사	인천99아**2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58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11호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1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인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자립 지원 제도 및 주거 지원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립 및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

○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 확대 반영 (안 제1조)
-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및 제6조)

○ 자립생활주택 지원대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1. ~ 3. 1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24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자립 지원 제도 및 주거 지원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립 및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

○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 확대 반영 (안 제1조)
-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및 제6조)

○ 자립생활주택 지원대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제53조, 제55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인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3호, 제4조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 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5.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활동지원급여

4. 주거지원서비스

제9조 제목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 운영”으로 하고

제9조 중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로 하며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명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

현 행	개 정 안
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
4.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
5.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5.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 --------.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6조(지원사업)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활동지원급여 4. 주거지원서비스
제9조(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제9조(자립생활주택 운영) -----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 ---------- ----------

현 행	개 정 안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 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자립생활주택----------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조(정의), 제5조(지원사업), 제 16조(자립생활주택), 제13조(예산의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 남동구 자립생활주택 상세내역 : 2개소

구 분	남동구 자립생활주택 1호	남동구 자립생활주택 2호
소재지	논현로46번길 39, 102동 901호 (논현동, 동원베네스트타워) ※ 주거용오피스텔	논현로46번길 39, 103동 1603호 (논현동, 동원베네스트타워) ※ 주거용오피스텔
규 모	85㎡	85㎡
운영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자	문종권	최완규
정원(현입주자)	3명(3명)	3명(3명)
종사자(정원)	코디네이터 1명(1명)	코디네이터 1명(1명)
전세보증금 (시비100)	180,000천원	180,000천원
운영위탁기간	2021.03.01.~2023.02.28.	2020.09.04.~2022.09.03.
운영예산 (시50:구50)	25,292천원(시비)/ 24,692천원(구비)	25,292천원(시비)/ 24,692천원(구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6.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7.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9. “자립정착 생계비”란 시설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10.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시설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인천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8. 여성장애인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및 평가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조직과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 사례관리
2. 자립생활 기술훈련
3. 활동지원급여
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6. 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포함)사업
7.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
8. 주택 개·보수 사업
9. 정보제공 활동
10.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
11.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지역사회 통합

제15조(자립생활 교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제17조(자립주택 제공) 시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준비하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8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지원 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2.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초기 정착금
3. 자립정착 생계비
4.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2.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

5.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6.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사업의 우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성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란「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

한다.

5.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가름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제3장 지역사회 전환 및 주거생활 지원

제8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2-12호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1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권익보호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지원방법·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3. 11. ~ 3.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23

발의연월일 : 2022년 03월 11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오용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권익보호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 지원방법·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 음”

□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table>
<tr><td>발 생 일</td><td></td><td>부 서 명</td><td></td></tr>
<tr><td>피해 공무원</td><td>○ 직급(위):
○ 성 명:</td><td>연 락 처</td><td></td></tr>
<tr><td>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td><td colspan="3">○
○
○
○</td></tr>
<tr><td>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td><td colspan="3">○
○
○
○</td></tr>
<tr><td>지원 신청
내용</td><td colspan="3">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td></tr>
<tr><td>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td><td colspan="3">○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td></tr>
</table>

「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중 심리상담에 필요한 금액과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의료비에 필요한 금액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2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3. 25.
3. 근 거 법 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3. 10. ~ 2022. 3. 2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20 -0202772	봉수아피자 남동점	㈜ 에스테크21 임**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89번길 52,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3-07	2022-03-25

6. 고 지 사 항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3. 24.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2년 3월 10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